



기 관 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재고금액 승인(결정) 통지(재고납부세액)

1. 귀하(귀사)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20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.
2. 이에 따라 귀하(귀사)의 고정자산 매입 명세 및 20 년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한 「간이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」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재고금액을 승인(결정)하고 재고납부세액을 알려드리니, **20 년 기** 부가가치세의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신고·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(납부 근거 : 「부가가치세법」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)

납 세 자	상 호		사업자등록번호	
	사업장			
<재고금액 및 재고납부세액>				(단위 : 원)
	품 명	재 고 금 액	재 고 납 부 세 액	
다음 장에 계속				

끝.

기 관 장

직인

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◆ 담당자 : ○○세무서 ○○○과 ○○○조사관(전화 : , 전송 :)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)

전송(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

210mm×297mm[일반용지 70g/m²(재활용품)]